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서미화의원원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836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총괄 검토	5
1.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5
2. 입법 배경 및 검토 의견	7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13
III . 주요 내용별 검토	17
1. 정의	17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22
3.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실태조사	24
4.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센터	29
5.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 대상 및 참여자 보호 등	32
6. 추진 기관에 대한 지원 및 실적 점검 등	35
7. 부칙	39

I. 개요

1.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서미화의원·김선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83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미화의원·김선민의원 등 21인
- (2) 제 안 일 : 2024. 12. 23.
- (3) 회 부 일 : 2024. 12. 24.

나. 제안이유

그동안 중증장애인의 취업 관련 정책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으나,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지난 10여년 동안 20% 수준에 그침.

이는 기존 정책이 경증장애인 위주로 진행되어 왔고,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능력에 대한 불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기 때문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을 실시 중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최중증장애인이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교육이라는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하는 일자리를 통하여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등 비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중증장애인’에 특화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전통적인 노동 방식이 아닌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노동 방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큰 차이가 있음.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동 사업과 같은 형태의 일자리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바, 동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확대를 추진하여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이 법은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제27조에 따른 공공부문의 중증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이 직접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공공일 자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2) 권리중심공공일자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노동권 보장 및 장애인권리협약 홍보를 통한 시민사회 인식개선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권리옹호, 문화예술, 인식제고 직무를 제공하는 맞춤형 일 자리를 말함(안 제2조).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 (4)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공공기관등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제6조).
-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개발 및 발굴 등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안 제8조).
-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교육, 정당한 편의제공, 홍보, 조사·연구 등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7)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추진 실적 및 향후 확대 계획 등을 매년 점검·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등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 실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

영하여야 함(안 제16조).

-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창출한 다양한 형태의 권리중심공공일자를 민간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여야 함(안 제17조).

Ⅱ. 총괄 검토

1.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 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발굴·창출·제공하고, 관련 교육·홍보·조사·연구 및 예산 등과 같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실적점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센터 등 추진체계 및 지원기관 설치·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참여자 보호 및 차별금지, 편의제공, 역량강화 교육 등과 같은 각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별도의 장 구분 없이 총 21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음.

< 제정안의 구성 체계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실태 조사)
제8조(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의 실시 및 지원센터의 설치·지정)
제9조(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의 대상)
제10조(참여자 보호 및 차별금지)
제11조(교육)

제12조(정당한 편의제공 등)	
제13조(홍보)	
제14조(조사·연구 등)	
제15조(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적극 추진 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원)	
제16조(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 실적 점검 등)	
제17조(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확대)	
제18조(자료의 요청)	
제1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20조(비밀 누설 금지)	
제21조(벌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둘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개발 및 발굴을 위한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음.
- 셋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참여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 부당한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아니되며, 장애를 이유 근무조건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됨.
-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추진 실적 및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평가에 반영하여야 함.

2. 입법 배경 및 검토 의견

-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받고, 그들의 능력과 기여를 통한 사회참여 증진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적인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¹⁾
- 그간 우리 정부는 1990년에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의무고용 제도,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 제도, 근로장애인을 위한 각종 고용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해 왔으나, 이들 정책은 대체로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데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여 왔음.²⁾
-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³⁾의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수는 각각 19만여 명과 18만여 명으로 나타나 경증장애인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경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수는 각각 72만여 명, 68만여 명).
 - 이는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며, 장애 정도가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함.

1) 최형민. (2023). 서울시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장애인의 삶의 질 변화에 관한 연구: 중증, 최중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의 재해석, 333-348.

2) 국회미래연구원. (2023). '탈시설' 사회에서의 장애인 노동: 당사자의 경험을 통해 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3)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기존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

< 2024년 상반기 장애정도별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비교 >

(단위: 명)

장애정도 \ 지표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및 고용률
중증	788,297	190,672 (24.2%)	183,685 (23.3%)
경증	1,786,101	727,456 (40.7%)	687,654 (38.5%)

주1):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기존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
 주2):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100,) ,고용률=(취업자 수/15세 이상 인구)*100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4년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024.11.

□ 한편, 우리 국회에서 2008년 12월 비준하고, 2009년 1월부터 발효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에서는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 노동권을 인정해야 할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부문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평가, 분석, 해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일반논평 제8호(장애인의 노동과 고용에 관한 권리)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권고하였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사항 및 성과 등에 관한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검토한 「장애인권리위원회 제02-03차 최종견해」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특정적으로 고안된 적극적 우대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 근로 및 고용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한다. 이는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직업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고용기간동안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하여, 특히 다음의 사항을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g) 공공부문에 장애인을 고용한다.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08호(2022) - 장애인의 노동과 고용에 관한 권리

40. 제27조의 하위 조항은 공공 및 민간 부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당사국이 고용주인 경우, 포용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의 채용과 승진에 있어 능력에 기반한 객관적인 기준을 도입하고 장애 직원의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장애인의 생생한 경험에서 도움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면 공공 부문에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을 유치하고 채용하고, 공공 부문의 장애 직원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41. 위원회는 공공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해 왔으며, 이러한 조치로는 직업 훈련을 비롯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의 선별적 배분이 있다. 추가적인 조치에는 고용주 인력의 최소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할당제 또는 목표제가 있다. 공공 당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에는 연례 보고가 의무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제02-03차 최종견해(2022) CRPD/C/KOR/CO/2-3 장애인권리위원회

근로 및 고용(제27조)

56.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 8.5에 따라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d) 장애인이 보호 고용에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접근 가능한 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이행하고 개방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의 참여 증대를 위한 할당제를 포함하여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특정적으로 고안된 적극적 우대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보장할 것.

□ 현재 우리나라에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 관해 직접적으로 명시한 법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4)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4)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

록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인식개선교육 보조 강사’,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 및 홍보’ 등과 같이 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무와 유사한 직무도 있음(참고자료 1: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 개요 및 2025년 복지일자리 직무 현황).

또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인천형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 등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참고자료 2: 지방자치단체 유사 사업 현황).⁵⁾

- 주로 장애인식개선, 장애인권익옹호, 문화예술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함.

□ 이에 제정안은 장애인 중에서도 경제활동이 어렵고, 불리한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노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노동권 보장 및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개발·발굴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한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는 국가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그들의 능력과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최근 서울시에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하고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였음.(박송이, (2024.1.27.). 서울시 ‘선택적’ 약자와의 동행...일자리 잃은 중증장애인들.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1270900021>)

기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소극적 ‘직업재활’에서 적극적 ‘고용권리’ 보장으로 전환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제정안의 세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① 중증장애인 정의 방식, ②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태조사 등에 있어 장애인 고용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참여 및 기존 유사 계획 간 중복 방지 방안, ③ 전달체계 역할을 하게 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방식, ④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 감면과 보조금 지급 관련 사항 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사업 실적 반영 여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서울특별시 등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법」 등 현행 법령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사업이 이미 실시 중에 있으므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한바, 제정안의 논의 과정에서 이상의 사항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개발·발굴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해야 하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제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362호)이 계류 중에 있는바, 유사·중복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관련 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u><신설></u>	<u>제46조의3(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u>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의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 특성과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인식제고를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방송 및 언론, 장애인 및 가정, 일반 국민 등을 상대로 하는 교육, 문화예술,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 자리를 개발·발굴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u>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센터)</u>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참여, 자립생활 전반 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장애인의 기본권 향상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육성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자기결정 및 선택 강화 2. 장애인의 민주 시민 역량 증진 3.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한 모니터링 4. 장애인거주시설 등 생활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한 교육 및 상담 5. <u>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제공</u> 6. 장애인 기본권 향상 활동 7. 기타 장애인 동료 간의 자조 및 옹호

3. 관계 부처⁶⁾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제정안은 기존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추진체계와 통상적 일자리 개념과 차이가 있고, 유사 선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특정 활동을 한정하여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사업의 운영과 세부 직무 등을 지침으로 규정하는 기존 사업 체계와 차이가 있어 사업의 탄력적인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미 유사한 직무를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어 법률 제정의 실익이 적음.

- 또한, 직업경험 제공, 경제성 창출 등 통상의 일자리 개념보다 활동에 가깝고, 사업 중단 사례와 반대의견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동 제정안을 포함하여 3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함께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음.

- 제정안은 기존 유사 법안과 수행 주체에 차이가 있으며, 최저임금 지급 의무화, 공공기관 평가 반영, 고용 연속성 보장 등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6) 그외 관계 부처 의견은 주요 내용별 검토 중 해당조문 부분에서 별도로 소개함.

나. 기획재정부

- 현행 법률에 따라 이미 지원 중인 사업들로 신규 법령 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일자리 지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장애인자립지원 시범사업 등
- 임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타 장애인 지원 사업과의 형평성 고려 시 강행규정으로의 제정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 지원 여부는 수혜대상, 유형,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임.

다. 법무부

-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포함, 「장애인고용법」, 「장애인복지법」 등 타 법률에 규정된 기본계획과의 중첩 문제 해소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라. 서울특별시

- 3년간('20~'23년) 권리중심일자리 사업 수행 결과, 직무 대부분이 집회·시위·캠페인에 편중되어 사업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함.
- 인식증진, 가치 표현 등 활동은 개념 및 목적상 일자리와 다르며,

해당 법령의 제정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임.

다. 한국장애인개발원

-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내 직무 중 문화예술활동, 인식개선교육 보조강사 등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공공영역에서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적성 및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 확대 및 최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공급 필요성에 대해 동의함.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지원장애인일자리사업은 전체 약 33천명중 심한장애 참여자가 약 63%(특화형 약 93%) 미취업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과 자립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향후 사업 추진 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사업 추진 목적 및 직무, 운영방식에 대한 유사·중복에 대한 사업의 정체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될 수 있는바,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사업의 대상 및 주체 등 효과적 관리 체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는 찬성하나, 동 법의 직무는 전문성과 업무적합성 등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일자리

개발과정의 구체성이 부족함.

- 기존 장애인 관련 기관의 일반적 업무에 속한다고 보이는데, 이를 특별법 형태로 입법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임.

사.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별도 법적 근거 마련은 유사중복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기존 장애인일자리 사업 유형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
-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특정 대상만을 위한 사업으로 노동시장 내 다양한 장애인 고용요구를 포괄하지 못하며, 특정 사업이나 제도에 대한 지원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중증장애인 고용 문제는 개별 일자리 사업을 통해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민관부문과 협력하는 포괄적 대책이 중요함.

Ⅲ. 주요 내용별 검토

1.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권리중심공공일자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노동권 보장 및 장애인권리협약 홍보를 통한 시민사회 인식개선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권리옹호, 문화예술, 인식제고 직무를 제공하는 맞춤형 일자리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 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활동
 - 나.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유해한 관습 등을 근절하는 활동
 - 다. 장애인의 능력, 가치 및 사회 공헌 등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 활동
 - 라. 사업체 등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기술, 실적, 능력과 기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활동
 - 마.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대중매체 등에서 장애인의 긍정적인 가치를 표현하는 활동
 - 바. 장애인의 의사소통 방식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정보를 수정·조정하거나 개발·창조·재생산하는 활동
 - 사. 사회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증진하는 활동
 - 아. 그 밖에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활동으로서 장애인 공동의 이익 증진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
3. “공공기관등”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 (제2조제1호 중증장애인) 제정안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현행 법령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개념은 각각 「장애인고용법」,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각각의 입법취지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음.

< 중증장애인의 개념 >

제정안	「장애인고용법」 및 하위 법령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 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하위 법령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①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및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중증장애인을 기존 장애등급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으로 정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하고 있는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는 기존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규정함

제정안의 ‘중증장애인’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제정안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 정의하여 문언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기존 1급~3급)’보다 더 좁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사업장에 고용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의 일 자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해됨.

이 같은 제정안의 입법취지와 동 조항이 「장애인고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정의 조항과 일치함을 고려한다면,

불필요한 하위 법령 제정과 해석상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정의 조항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만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제2조제2호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통상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에 특화된 일자리로 장애인의 ‘권리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등의 3대 직무로 인식되고 있음.⁷⁾

- 권리옹호 활동: 헌법에 보장된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으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일을 포함
- 문화예술 활동: 미술, 음악, 연극과 관련된 활동으로 작품을 전시하거나 공연하는 모든 예술활동을 포함
- 인식개선 활동: 장애인권 강사양성 등 지역사회의 장애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을 포함⁸⁾

안 제2조제2호는 이 같은 일반적인 인식과 유사하게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노동권 보장 및 장애인권리협약 홍보를 통한 시민사회 인식개선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권리옹호, 문화예술, 인식제고 직무를 제공하는 맞춤형 일자리”로 정의하면서, 다시 각 목에서 다음과 같이 중점 활동 내용을 세부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활동

나.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유해한 관습 등을 근절하는 활동

다. 장애인의 능력, 가치 및 사회 공헌 등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 활동

라. 사업체 등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기술, 실적, 능력과 기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활동

마.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대중매체 등에서 장애인의 긍정적인 가치

7) 석희정 등. (2024). 경기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개선방안 연구. 정책연구보고 2024-02. 경기복지재단.

8) 국회미래연구원. (2023). ‘탈시설’ 사회에서의 장애인 노동: 당사자의 경험을 통해 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보고서.

를 표현하는 활동

바. 장애인의 의사소통 방식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정보를 수정·조정하거나 개발·창조·재생산하는 활동

사. 사회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증진하는 활동

아. 그 밖에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활동으로서 장애인 공동의 이익 증진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그런데 각 목에서 규정한 내용은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활동”, “인식을 증진하는 활동”, “장애인의 긍정적인 가치를 표현하는 활동” 등 추상적·포괄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제정안 제2조제2호 본문 내용과 크게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각 목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권리중심공공일자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노동권 보장 및 장애인권리협약 홍보를 통한 시민사회 인식개선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권리옹호, 문화예술, 인식제고 직무를 제공하는 맞춤형 일자리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노동 관계법에 따른다.

□ 제정안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장애인고용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노동 관계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이 제4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동관계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제정안의 법제명에서 알 수 있듯이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는 제정안과 다른 법률과의 적용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집행상 모순이나 저촉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제정안이 특별법임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의 맞춤형 공공일 자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함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제정안의 목적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가 포함되어 있으며,⁹⁾ 제정안의 소관부처 또한 보건복지부임

9)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제27조에 따른 공공부문의 중증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고, 중증장애인이 직접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공공일 자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8조

1.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 (a)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을 고려하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노동관계 법률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근로관계 상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관련 법률도 포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46조(고용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이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차별금지) ①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

(b)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

(c)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a)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기획된 효과적인 대중인식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속할 것

(i)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수용성을 함양할 것

(ii)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인식의 증대를 촉진할 것

(iii) 장애인의 기술, 장점 및 능력과 직장 및 고용시장에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b) 유아기부터의 모든 아동을 포함하여 교육제도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양성할 것

(c) 이 협약의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모든 언론 기관에 대해 권장할 것

(d) 장애인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을 장려할 것

3.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실태조사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리중심공공일 자리를 통한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의 기본방향
2.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3. 중증장애인 일자리 현황 및 실태
4.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창출 및 확대에 관한 사항
5.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공공기관등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의 실시 계획
2. 전년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의 결과 및 평가
3.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증감 등 현황
4.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 참여 기관 등 현황

③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시·도지사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 제2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통한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의 기본 방향, 중증장애인 일자리 현황 및 실태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공공기관등(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관한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등이 지역별, 기관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 다만, 현행 「장애인고용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는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고¹⁰⁾,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도 장애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바¹¹⁾,

각 기본계획 간 관계를 고려하여 내용상 중복이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주체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되, 이를 「장애인고용법」 제26조¹²⁾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
- 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2.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1)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교육문화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장애인 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장애인의 취업직종·근로형태·근속기간·임금수준 등 고용현황 및 장애인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고용법」 제2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실태조사와의 중복과 혼란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실시주체와 실시주기를 각각 고용노동부장관과 1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보건복지부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기본계획 관련, ①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건강보험종합계획,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 통상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입법례를 고려하여 수립주기를 5년으로 조정하는 방안, ② 장애인과 관련된 계획이므로, 더 상위 계획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

연도별 시행계획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추가하는 방안,

실태조사 관련,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으며,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 관련, 2024년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에 따라 4종의 국가승인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동 조사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장

애인 노동시장 전반의 규모와 특성 파악을 목적으로 설계되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만을 별도로 반영해 조사하는 것은 어려우며,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에서 권리중심 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별도 실태조사를 기획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4.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센터

제8조(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의 실시 및 지원센터의 설치·지정)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개발 및 발굴
2. 중증장애인에 대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정보 제공 및 상담
3.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연계
4.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의 실적·성과 관리
5. 그 밖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립 또는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 절차·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개발 및 발굴, 연계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운영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의 본질이 전술한 바와 같이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노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노동권 보장 및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있음을 고려하면,

기존 민간의 전달체계를 지정하여 활용하는 방식보다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직접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

현재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참고자료 3: 지방자치단체 유사 사업 현황).

- 한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관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362호)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제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관련 조문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자립생활 전반 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장애인의 기본권 향상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육성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자기결정 및 선택 강화
2. 장애인의 민주 시민 역량 증진
3.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한 모니터링
4. 장애인거주시설 등 생활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한 교육 및 상담
5.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제공**
6. 장애인 기본권 향상 활동
7. 기타 장애인 동료 간의 자조 및 옹호

5.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 대상 및 참여자 보호 등

- 제9조(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의 대상)** ①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참여대상 중증장애인의 구체적 선정 기준, 선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참여자 보호 및 차별금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한다.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 참여자들에 대하여 사업 참여의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고용된 중증장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는 고용계약의 변경·해지, 고용계약 외의 업무 강요 등 부당한 노동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직무, 급여 등 근무조건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의 대상)**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의 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며, 이중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중증장애인을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정의 조항(제2조제1호)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동 조항에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

용함에 따라 불필요한 어휘 중복으로 인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심한 장애 내에서 별도 기준을 두어 우선권을 주는 것은 또 다른 차별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제10조 참여자 보호 및 차별금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그간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¹³⁾을 중심으로 실시되어 온 한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참고자료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 2022년 기준,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은 일 평균 4시간, 월평균 119시간을 근로하여 월평균 64만 8천원의 임금을 받음.¹⁴⁾
- 2022년 기준, 직업재활시설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은 8,741명(61.4%)임.¹⁵⁾

13)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라 보호작업장(10인 이상), 근로사업장(30인 이상), 직업적응훈련시설(훈련장애인 20인 이상)의 3가지 세부유형으로 나뉘며, 보호작업장은 근로장애인의 80% 이상, 근로사업장은 60%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두도록 하고 있으며, 직업적응훈련시설은 발달장애인을 훈련장애인의 80% 이상 유지하도록 함.

1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 5. 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에 근로기회 제공 위한 곳”

15) 한국장애인개발원. (202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¹⁶⁾에서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적용 제외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직업능력이 낮거나 직업능력이 있어도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들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최저임금 지급 명문화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하는 직업재활시설의 기피현상을 가속화 시키고, 사업 시행 주체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기관 등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하며, 「최저임금법」상 적용제외 규정과 상충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입장임.

또한 법무부는 벌칙조항을 고려할 때 제10조제4항의 위반행위 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를 제10조제5항(누구든지)과 동일하게 ‘자연인’으로 수정하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부당한 노동 행위를 강요한 자
2.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을 차별한 자

16)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6. 추진 기관에 대한 지원 및 실적 점검 등

제15조(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적극 추진 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거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 외의 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등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융자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 실적 점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추진 실적 및 향후 확대 계획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검·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등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 실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5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적극 추진 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원)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등에 대해 조세를 감면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이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공공기관등의 참여율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별법에서 조세감면을 규정하는 경우는 그 자체만으로 직

접 효과를 가져올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하는 후속 입법조치가 있어야 하며,¹⁷⁾

장애인 고용장려금 외 별도 보조금 지급의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법」 제30조¹⁸⁾에 따른 고용장려금에서 이미 고용장애인의 중증도와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으므로,¹⁹⁾ 지원의 중복성 여부와 그 채원 확보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보조금 신설보다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고용장려금의 지급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제16조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 실적 점검 등)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 사업의 실적 및 계획을 점검·작성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등의 경영평가시 동 사업의 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정부와 국회가 중증장애인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고용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공공기관등이 중증장애인 일자리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17) 국회사무처 법제실. (2024). 법제기준과 실제.

18) 「장애인고용법」 제30조(장애인의 고용장려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제28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9) 2025년 기준, 고용장려금은 (경증) 남 35만원, 여 50만원/ (중증) 남 70만원, 여 90만원

다만,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장관도 보건복지부장관과 함께 이를 점검·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²⁰⁾

현재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이미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장애인 등 사회형평적 인력 채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등의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²¹⁾

공공기관등의 경영평가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 실적을 포함하는 것이 사실상 중복 반영인지, 공공기관등에 대한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① 정부의 재정 보조사업 등은 그 실적을 제출하도록 이미 타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별도로 제정안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며, ② 공공기관 등의 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별도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평가 기준 등도 해당 법 시행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규정하도록 하고 있

20) 이 경우, 제정안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 요청 주체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제18조(자료의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1)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장애인 의무고용(0.3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장애인 의무고용 및 고용 노력(1.0점)으로 명시

으므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임.

또한 기획재정부는 현행법 체계상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현재 경영평가 시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관련 지원 실적이 이미 반영 중이므로, 기존 지표와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 목표와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고객 서비스에 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개별법에 경영평가 지표 규정이 남용되는 경우, 경영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경영평가 본래의 목적과는 괴리될 우려가 있으며, 현행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에는 장애인 고용실적도 해당 지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법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7.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사회에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인 ‘권리중심공공 일자리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 시범사업 실시, 부처 간 협의, 관련 예산확보 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요구되므로,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 개요 및 2025년 복지일자리 직무 현황〉

□ 사업 개요

- (대상)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 (일자리수) '25년 33,546명('24년 대비 +2천명)
- (예산액) '25년 2,345억원('24년 대비 +118억원)
- * 예산의 99%는 인건비(임금, 퇴직금) 및 인건비성 운영비(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등)로 구성
- (근무기간) 1년 단위(1.1~12.31), 최대 2년까지 참여 가능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은 계속 참여 가능
- (사업수행기관) 지자체 및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수행기관

□ 연도별 일자리수(예산) 및 예산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07	'10	'15	'20	'21	'22	'23	'24	'25
일자리수	4,990	6,920	14,879	22,396	24,896	27,546	29,546	31,546	33,546
참여자수	3,986	6,717	15,084	22,609	24,507	30,330	32,446	-	-
예산	8,164	20,430	66,203	141,520	159,593	185,315	207,299	222,695	234,510

□ 일자리 유형별 현황

구분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	특수교육 연계형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 조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근무시간	주40시간	주20시간	월56시간(주3~4일)		주25시간	
참여기준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미취업 등록장애인	특수교육 기관재학생	지적 및 자폐성장래인	미취업 안마사
주요업무	공공 및 복지 행정업무지원		환경도우미, 주차단속, 사무보조, 사서보조, 보육도우미 등 45개 직무		식사지원, 이동지원 등 보조업무	출장안마 서비스 제공
근무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공공기관,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		노인요양기관 및 시설	경로당 등 지역사회시설
월 급여	210만원	105만원	56만원		131만원	131만원
일자리수	7,740명	4,075명	19,094명		1,277명	1,360명
국고보조율	서울 30%, 지방 50%					전체 80%

□ 2025년도 복지일자리 직무 현황

※ 권리중심일자리 유사 직무 ' ' 표시

연번	직무명	주요내용
1	대형서점 도서정리	도서 라벨부착 및 도서정리업무
2	우편물 분류	동별, 집배원별, 코스별로 우편물을 분류 (우편분류, 반송소인확인, 소인찍기, 작업장정리등)
3	사무	사무기록 유지와 관련된 업무 수행 및 관련 업무 보조(문서정리, 복사, 자료작성, 집계 등)
4	도서관 사서보조	도서관 사서의 제반업무 수행 및 관련 업무 보조 (장서인, 날인, 색띠부착, 라벨부착, 도서정리 등)
5	은행서비스 안내	은행 고객 맞이 및 안내 서비스 등의 업무
6	건강검진센터 지원	건강검진실 내 보조업무 및 검사실 이동·병원 안내업무
7	스포츠 이용시설 안내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락커키 불출, 회원확인, 수건정리 등)
8	재래시장관리	재래시장 고객 안내 및 정리 정돈 등의 업무
9	인식개선교육 보조 강사	인식개선 활동을 위한 강의 및 지역 내 문화·관광자원 해설 등 장애인식개선 교육 보조 업무
10	온라인콘텐츠 모니터링	온라인 내 인권차별, 불법 광고물, 저작물 등 관련 기관 신고 및 모니터링 업무
11	영유아 돌봄	보육교사를 도와 영유아의 보육과 건강관리 보조 (동화구연, 식사보조, 놀이 등)
12	어린이 동화 구연	음성언어로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업무
13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부 및 복지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업무
14	사회서비스사업 모니터링	사회서비스 사업 모니터링 업무(활동보조, 재활치료사업 등)
15	실버케어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활동 지원 업무(식사, 용변, 개인위생, 이동보행서비스 등)
16	디앤디케어(D&D Care)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 등을 지원하는 업무 (차량승하차, 식사지원, 양치지원, 청소 등)
17	교통약자 승하차지원	서틀버스 등 교통수단 이용 시 교통약자 승하차를 지원하는 업무
18	반려동물돌봄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돌보는 업무(산책, 먹이주기, 케이지청소, 목욕 등)
19	캠핑장관리	캠핑장 정리 및 청소, 프로그램 진행 업무수행 및 관련업무 보조
20	템플스테이 업무 보조	지역 내 문화프로그램 등 지원 업무 (행사장 내·외부 시설 및 정리, 프로그램 지원, 이용객 안내 등)

연번	직무명	주요내용
21	문화예술 활동	합창공연, 미술활동, 창작 등 전반적인 문화예술 활동업무 또는 보조 업무 수행 * 월 1회 이상 작품활동(전시, 공연, 행사 등) 및 결과보고서 작성
22	스포츠영상촬영 및 편집	스포츠선수의 연습 및 경기 장면을 촬영·편집하여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는 업무
23	생활체육 보조코치	다양한 체육활동 분야에서 체육지도자(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를 보조하거나, 체육프로그램 진행을 지원하는 업무
24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 및 생활지도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언어발달, 기초학습, 생활예절, 대인관계능력 향상 및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업무
25	발달장애인특화 활동지원사보조	발달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 배치되어 활동지원사의 업무(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지원 등)를 보조하는 업무
26	호텔객실관리	호텔, 유스호텔 등 숙박기업 내 객실 정리 업무
27	기부물품관리	기부물품 정리, 포장, 분류, 진열, 정리 업무 및 재활용 물품 세탁, 수선, 재포장 업무
28	환경정리	지역 및 관공서의 정원관리 및 환경 정비, 청소 등의 업무
29	버스청결관리	버스 내·외부 청소 및 소독 등의 업무
30	공공자전거 세척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자전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자전거의 세척, 자전거 관련 시설 유지·관리 등의 업무
31	이동보조기기 분해 세척 및 소독	이동보조기기 분해·세척 및 소독·조립과 간단한 경정비 업무
32	다회용품 세척 및 관리	다회용품 대여소 운영 등을 통해 다회용품 대여, 세척, 소독 관리 업무
33	급식지원	단체급식 등의 식재료 준비와 조리, 배식, 기구세척, 주방 및 홀청소, 뒤처리 등의 업무
34	대형마트 매장정리 및 상품관리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이 쇼핑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매장정리, 상품진열, 카트정리, 온라인 주문상품 포장 등의 업무
3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역계도 및 홍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계도·홍보 업무 수행 및 주차단속 보조
36	세탁	오염된 세탁물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업무
37	장난감 세척	장난감을 대량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기관에서 장난감 청결유지 업무 (장난감소독, 종류별 작동여부 확인 등)
38	문서파기	공공 및 민간기관, 기업 등의 주요 문서 파기 업무 (현장문서, 공장입고문서, 자체문서파기 등)
39	농업·임업·어업 관련 직무	여러 가지 간단한 농업·임업·어업 관련 단순 업무
40	정리 및 수납	취약계층 가정, 공공기관 등의 정리 및 수납 업무 수행

연번	직무명	주요내용
41	방역·소독활동	다중이용시설 등에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방역·소독하는 업무
42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폐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새 활용) 또는 리사이클링(재 활용) 제품 분류/적재/제작/판매,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진행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환경분야 전반의 업무
43	정신장애특화 동료지원활동	동료상담, 자조모임 지언, 사회활동 지원
44	농아인-농아인 케어	일상생활 상담을 통한 정서지원, 생활정보 및 복지정보제공, 민원처리 동행 지원
45	발달장애인 물리치료보조	치료환경 관리, 환자 대기 및 이송돕기, 운동치료, 전문치료 돕기
46	무인정보단말기 (키오스크) 안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객 대상 무인정보단말기 사용을 돕는 직무
47	병원 내 환자이송보조 및 안내	병원 방문객에게 안내(진료과, 수납 등)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고, 휠체어 이동, 침상이동 등을 보조하는 직무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2: 지방자치단체 유사 사업 현황〉

구분	사업명	근로조건	대상자격 및 직무 내용	채용인원 (장애인)	소요예산 (백만원)	비고 (특이사항)
부산	권리중심 중증장애 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주16시간 월84만원 (최저임금 지급)	(대상) 18세 이상 부 산시 등록 미취업 중 증장애인 (직무) 인식개선, 권 익옹호, 문화예술활동	72명	951	중구, 서구, 기장군 3개 미시행
인천	인천형 중증장애 인 맞춤형 복지일자 리	주14시간 월56만원 (최저임금 지급)	(대상) 18세 이상 미 취업 중증장애인 (직무) 인식개선, 권 익옹호, 문화예술활동	70명	560	옹진군 미시행
광주	권리중심 중증장애 인 공공일자 리	주15시간 월79만원 (최저임금 지급)	(대상) 18세 이상 미 취업 최종증장애인 (직무) 인식개선, 권 익옹호, 문화예술활동	25명	441	-
경기	권리중심 중증장애 인 맞춤형 일자리	①주16시간 월84만원 ②주20시간 월105만원 (최저임금 지급)	(대상) 도내 거주 등 록·미취업 중증장애 인 (직무) 인식개선, 권 익옹호, 문화예술활동	730명	10,189	2개 유형 (직무는 동일, 근로시간 만 차이)
강원	중증장애 인 강원형 일자리 지원	주15시간 월79만원 (최저임금 지급)	(대상) 18세 이상 「장애인고용법」상 등록된 중증 장애인 중 미취업자 (직무) 인식개선, 권 익옹호, 문화예술활동	46명	679	춘천, 원주, 강릉, 고성 시행
충북	충북형 최중증 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시범운영	주14시간 월56만원 (최저임금 지급)	(대상) 18세이상 등 록 미취업 심한장애 인 (직무) 인식개선, 권 익옹호, 문화예술활동	50명	460	-
전북	전북형 권리중심 중증장애 인 맞춤형 공공일자 리	주14시간 월56만원 (최저임금 지급)	(대상) 18세이상 등 록 미취업 심한장애 인 (직무) 인식개선, 권 익옹호, 문화예술활동	162명	1,614	남원, 김제, 완주, 무주 등 8개 미시행
전남	전남형 권리중심 최중증장애 인	주15시간 월79만원 (최저임금 지급)	(대상) 18세 이상 등 록·미취업 최종증장 애인 (직무) 인식개선, 권	120명	2,128	담양, 곡성, 구례, 함평 등

구분	사업명	근로조건	대상자격 및 직무 내용	채용인원 (장애인)	소요예산 (백만원)	비고 (특이사항)
	공공일자 리		익ونغ호, 문화예술활동			12개 미시행
경남	권리중심 중증장애 인 맞춤형 일자리	주 15시간 월 79만원 (최저임금 지급)	(대상) 18세이상 경남 도 등록 미취업 최종 증장애인 (직무) 인식개선, 권 익옹호, 문화예술활동	118명	997	함안, 고성, 합천, 미시행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2023.12.

구 분	합 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목적/직무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프로그램 및 근로기회 제공하고 임금지급	직업능력은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 제공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기초작업능력을 습득, 사회적응훈련 실시
이용자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근로장애인 10명 이상 (아중 중증비율 80% 이상)	근로장애인 30명 이상 (아중 중증비율 60% 이상)	훈련장애인 20명 이상 (중증 100% 발달비율 80% 이상)
시설 수	811개소	704개소	69개소	38개소
이용 장애인(a+b)	21,225명	17,437명	2,910명	878명
근로 장애인(a)	14,570명	11,786명	2,784명	
(중증장애인)	12,912명 (88.6%)	10,616명(88.6%)	2,296명(88.6%)	
(최저임금 적용제외)	8,975명(61.6%)	8,375명(71.1%)	600명(21.6%)	
훈련 장애인(b)	6,655명	5,651명	126명	878명
(중증장애인)	6,078명 (91.3%)	5,197명(91.6%)	107명(84.9%)	792명(90.2%)

자료: 보건복지부